

『뉴질랜드, 에어컨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규정 개정』

2025. 12. 30.

TBT 통보여부	통보	HS Code	8415
통보국	뉴질랜드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107 (2024)
작성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65kW 이상의 에어컨에 대한 효율 기준 추가
- (적용범위) HS 코드 8415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① 65kW을 초과하는 에어컨에 대한 효율 기준 추가 및 ② 규제 적용 제외 기준을 추가
- (인증정보)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과 의무 에너지 성능 라벨(MEPL)은 본 규정의 요건을 따르며, 전기 안전은 전기 장비 안전 시스템(EESS) 인증을 준수해야 함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유사품목 규제 동향
 - (유럽연합) 가정용 소형 에어컨 제품에 대해 에코디자인 요건은 Regulation (EU) No 206/2012을, 에너지 라벨링은 Regulation (EU) No 626/2011이 적용
 - (영국) 「The Ecodesign for Energy-Related Products and Energy Information Regulations 2021」을 따르며, EU와 유사하게 12kW를 기준으로 소형과 대형 제품군을 나누어 MEPS를 적용하고, 적합성 평가 후 UKCA 마크 부착
 - (인도) 에너지 효율은 BEE의 S&L 프로그램에 따라 룸 에어컨은 강제적으로 스타 라벨링을 획득해야 하며, 마크는 BIS의 강제 인증 마크를 취득해야 함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유럽 대비 기준 매개변수가 다르지만, 더 낮은 수준의 효율 기준으로 보이며, 대형 에어컨에 대한 기준 하한선 수립을 목적으로 함
- (권고사항) 뉴질랜드 에어컨 시험 표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규제 대상 확대) 인증 획득 비용 및 출시 지연
- (시험 표준 상이) 중복 시험 발생 및 비용 증가

□ 대응 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 (중소기업) TTMRA를 고려 뉴질랜드 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인증기관이 다수인 호주에서의 인정절차 방안 검토
 - (중견기업) 개정 규정 시행 전 기존 인증 사전 개선 계획 수립
 - (대기업) 규제 수준이 더 높은 유럽(EU), 미국 등의 요구사항을 포괄하는 고효율 제품 설계 반영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4
III. 관련 인증 정보	12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6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6
2. 주요국 규제수준 비교	18
V. 예상 주요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9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9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21
VI. 대응 방안	22
참고 규정 원문 번역본	23

요약문

규제명	영문	Revision of the Regulation on Minimum Energy Efficiency and Labelling for Air Conditioners		
	국문	에어컨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규정 개정		
WTO/TBT 통보문 번호		NZL/78/Add.2	통보국	뉴질랜드
채택(예정)일		2025. 10. 13.	시행현황	개정 최종안
시행(예정)일		2026. 05. 01.	통보일(고시일)	2025. 11. 10.
HS Code		8415	의견수렴 마감일	해당 없음
총 수출액 (천불)		1,401,097 (2024)	對불행국 수출액 (천불)	107 (2024)
중소기업 품목여부		해당 없음		
규제 주요 내용	해당 부처	뉴질랜드 산업혁신고용부		
	규제 목적	65kW 초과 대형 에어컨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 하한선 지정		
	주요 내용	65kW 이하 에어컨 제품 유형에 대한 효율 기준 추가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뉴질랜드의 에어컨에 대한 시험 표준 요건 총괄 여부 확인 필요		
대응 여부	기업 의견	규제 대상 확대로 인증 획득 비용 증가 및 출시 지연 가능성 존재		
	대응 방안	개정 규정 시행 전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대조하여 사전 간접 계획 수립		

□ 도입배경

- 가정용·산업용 제품의 에너지 효율 규정 주요 정보
 - (주요 요구사항) ①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②의무 에너지 성능 라벨(MEPL)
 - 규제 개정 이력

기존 규정	개정 규정
「Energy Efficiency (Energy Using Products) Regulations 2002」 - 이하, 기존 규정 또는 SR 2002/9	「Energy Efficiency (Energy Using Products) Amendment Regulations 2025」 - 이하, 개정 규정

※ (참조 정보) 뉴질랜드의 제품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E3, Equipment Energy Efficiency Programme)은 호주와 공동으로 가정용·산업용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규제함. 호주의 경우, 제품별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규정으로 에너지 효율을 규제

- WTO TBT 통보 이력
 - 뉴질랜드는 추가·수정된 주요 제품 유형별로, 본 규정의 개정 현황을 WTO TBT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통보

[표 1] 개정 규정 관련 통보문 목록 (개정 최종안 기준)

통보문	규제 대상 품목	관련 Schedule
NZL/78 (개정 초안) NZL/78/Add.1	65kW 이상의 에어컨	Schedule 2A
NZL/78/Add.2 (본 규정)		
NZL/128	세탁기, 회전식 건조기, 식기 세척기	Schedule 2C, Schedule 2D, Schedule 2F
NZL/128/Add.1		
NZL/79	냉장 캐비닛	Schedule 2B
NZL/79/Add.1		
NZL/79/Add.2		
NZL/80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Schedule 2E
NZL/80/Add.1		

□ 규제 요지

○ 개정 규정 주요 내용

- MEPS와 MEPL 규제 준수 대상 추가 및 규제 적용 제외 기준 명확화
- 5종 제품에 대한 별도 효율 기준을 Schedule 2C ~ 2G로 추가
- 그 외 편집상 변경

○ NZL/78/Add.2 개정 주요 내용

- 65kW* 이상의 에어컨에 대한 효율 기준 추가
* 에어컨의 정격 표준 냉방 전용량 또는 정격 표준 난방 전용량
- Schedule 2A의 규제 적용 제외 기준 추가

□ 적용대상

○ (HS 코드: 8415) 공기조절기*

- * 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 시행일

○ 2026년 5월 1일부터

□ 에너지 효율 규정 주요 내용

○ 주요 조문 및 Schedule 구성

[표 2] 뉴질랜드 「에너지 효율 규정」 주요 조문 및 Schedule 목록

조문	구분	주요 내용	비고
4조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제조업체/수입업체의 의무	기준 규정 대비 변경사항 없음
5조		판매자의 의무	
6조	라벨링 요구사항	제조업체/수입업체의 의무	기준 규정 대비 변경사항 없음
7조		판매자의 의무	
8조	일반 요구사항 및 면제	표시 준수 관련 요구사항	기준 규정 대비 변경사항 없음
9조		통계 목적 정보 제공 요구사항	
10조		추가 정보 요구사항	
11조		중고 제품의 면제	
12조		최소 수량에 대한 면제	
13조	위반 및 항변	규제에 대한 위반 요건 및 처벌	효력 만료
14조		위반 요건에 대한 항변 조항	
15조 ~ 16조	전환 규정	기준 규정의 전환 규정	효력 만료
16A조 ~ 19조	Schedule 2A ~ 2G에 대한 명시 조항	Schedule 2A ~ 2G로 제품별 기준을 별도로 정함을 명시	개정
Schedule 1	통합 기준	MEPS가 적용되는 제품 및 적용 참조 표준 목록	
Schedule 2		MEPL이 적용되는 제품 및 적용 참조 표준 목록	
Schedule 2A	제품별 기준	에어컨에 대한 별도 기준	추가
Schedule 2B		냉각 장치에 대한 별도 기준	
Schedule 2C		의류 세탁기에 대한 별도 기준	
Schedule 2D		식기 세척기에 대한 별도 기준	
Schedule 2E		가정용 냉장 기기에 대한 별도 기준	
Schedule 2F		회전식 의류 건조기에 대한 별도 기준	
Schedule 2G		3상 케이지 유도전동기에 대한 별도 기준	
Schedule 3	선언서 서식	-	기준 규정 대비 변경사항 없음

- Schedule 1와 Schedule 2는 MEPS 및/또는 MEPL 규제 대상 제품군과 해당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참조 표준을 명시함
 - 일반적으로 Schedule 1와 Schedule 2에 명시된 제품은 해당 참조 표준을 따라 MEPS 및 MEPL 요건을 준수해야 함
 - Schedule 1와 Schedule 2의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는 본 규정에서 직접 MEPS 및/또는 MEPL 요구사항을 직접 규정하며, 이를 Schedule 2에 알파벳 접미사(예: 2A, 2B 등)를 사용하여, 제품별 기준을 명시
- 제조업체 · 수입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MEPS 및 MEPL 요건
 - 1)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준수
 - Schedule 1에 명시된 제품에 대해,
 - 해당 제품 등급에 대한 표준 또는 Schedule 2A ~ 2G를 따라, 해당 제품의 에너지 성능 특성을 준수
 - 해당 품목 제품 등급에 대해 규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
 - 2) 의무 에너지 효율 라벨링(MEPL) 준수
 - Schedule 2에 명시된 제품에 대해
 - 해당 제품의 등급 표준 또는 Schedule 2A ~ 2G를 준수하는 라벨을 ①해당 표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품에 부착하거나, ②제품을 라벨 부착 방법에 대한 지침과 함께 공급
 - 제품과 라벨의 모델 · 브랜드 표기 · 에너지 성능 특성 정보가 일치
 - 해당 품목 제품 등급에 대해 규정된 양식을 작성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

□ 에너지 효율 규정의 주요 개정 사항 (16A 및 Schedule 1, 2)

○ 5종 제품에 대한 별도 효율 기준 추가

- 5종 제품의 별도 효율 기준 Schedule 2C ~ 2G를 신규 추가하였으며, 16A의 명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표 3] 특정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 지정에 관한 명시 조항 (규제원문 16A)

기준(현행) 규정 (SR 2002/9)	개정 규정(NZL/78/Add.2)
16A. 65kW 이하 에어컨 및 냉장 캐비닛에 대한 Regulation의 적용 Schedule 2A 및 2B는 해당 Schedule이 다루는 제품과 관련하여 효력을 가진다 (각 Schedule 2A 및 2B의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Schedule 1 및 2의 해당 Schedule에 대한 참조를 확인한다)	16A. Schedule 2A부터 2G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Regulation의 적용 Schedule 2A부터 2G까지에 해당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Regulation의 적용(각 Schedule 제2항 및 Schedule 1과 2에 있는 해당 Schedule에 대한 참조를 확인한다)

○ Schedule 1의 주요 변경 사항

- 1) (MEPS 적용 제외 기준 추가) ①냉각기, ②밀착식 폐쇄형 에어컨, ③관형 형광등에 대한 제외 기준 추가
- 2) (규제 대상 품목 추가) 회전식 건조기를 규제 대상에 추가
- 3) (제품별 별도 기준 추가) ①가정용 냉장 기기, ②회전식 건조기, ③3상 케이지 유도 전동기에 대한 MEPS 기준 추가

[표 4] MEPS 적용 대상 제품군 및 적용 표준 목록 (개정 규정 Schedule 1 기준)

제품군	MEPS	시험 표준
에어컨 제품 등급 (Schedule 2A의 2조에 명시되고 해당 Schedule의 3조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대상)	Schedule 2A의 Part 2에 명시된 요구사항	Schedule 2A의 Part 4에 명시된 요구사항
냉각기 (다음 대상은 제외) - 전기 모터로 구동되지 않는 액체 냉각 패키지 - 원심 팬을 갖춘 공랭식 액체 냉각 패키지 - 원격 응축기를 갖춘 액체 냉각 패키지 - 물 이외의 유체를 위한 액체 냉각 패키지 - 자체 포함된 제어 시스템을 갖춘 추가적인 일체형 프리 쿨링 회로가 있는 프리	AS/NZS 4776.2:2008	AS/NZS 4776.1.1:2008 AS/NZS 4776.1.2:2008

제품군	MEPS	시험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쿨링 액체 냉각 패키지 (공랭식) - 응축수를 활용하기 위한 제어 장치 및 벨브를 갖춘 프리 쿨링 액체 냉각 패키지 (수랭식) - 냉매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품 및 제어 장치를 갖춘 열 펌프(역사이클) 액체 냉각 패키지 - 냉동 과정에서 열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 및 제어 장치를 갖춘 열 회수 액체 냉각 패키지 		
밀착식 제어 에어컨 (다음 대상은 제외)	AS/NZS 4965.2:2008	AS/NZS 4965.1: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ck enclosures가 포함된 열(row)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뜨거운 공기를 냉각하고 cold aisle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예: 밀착형 열 기반 냉각 장치) - 제조업체가 최소 35°C 건구 흡입 공기 온도까지의 작동 데이터를 공개한 품목 		
소형 형광등	AS/NZS 4847.2:2010	AS/NZS 4847.1:2010
컴퓨터	컴퓨터	AS/NZS 5813.1:2012
배전 변압기	AS 2374.1.2-2003	AS 2374.1.2-2003
건식 배전 변압기	AS 2374.1.2-2003	AS 60076.11-2006
외부 전원 장치	AS/NZS 4665.2:2005	AS/NZS 4665.1:2005
가스식 온수기	AS/NZS 4552.2:2010	AS 4552-2005
가정용 냉장 기기 (Schedule 2E의 2조에 명시되고 해당 Schedule의 3조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대상)	AS/NZS 4474.2:2009	AS/NZS 4474.2:2009
저전압 구리 열저장 전기식 온수기	AS/NZS 4692.2:2005	AS/NZS 4692.1:2005 NZS 4602:1988
냉장 캐비닛 (Schedule 2B의 clause 2에 명시되고 해당 Schedule의 clause 3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대상)	Schedule 2B의 4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Schedule 2B의 6조 및 7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회전식 건조기 (Schedule 2F의 2조에 명시된 대상)	Schedule 2F의 3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Schedule 2F의 7조~ 10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셋톱 박스	AS/NZS 62087.2.1:2008	AS/NZS 62087.1:2010

제품군	MEPS	시험 표준
가스식 온수기(전기 가열식)	AS/NZS 4692.2:2005	AS/NZS 4692.1:2005 NZS 4606.1:1989
텔레비전 세트	AS/NZS 62087.2.2:2011	AS/NZS 62087.1:2010
3상케이지 유도전동기 (Schedule 2G의 2조에 명시되고 해당 Schedule의 3조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대상)	AS/NZS 1359.5:2004 Schedule 2G의 4조 및 5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AS/NZS 1359.5:2004의 시험 방법 A나 B Schedule 2G의 7조 및 8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관형 형광등 (방폭형 등기구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선형 형광 램프는 제외)	AS/NZS 4782.2:2004	AS/NZS 4782.1:2004

○ Schedule 2의 주요 변경 사항

- 1) (규제 대상 품목 추가) ①3상 케이지 유도전동기, ②외부 전원 장치를 규제 대상에 추가
- 2) (제품별 별도 기준 추가) ①세탁기, ②가정용 냉장 기기, ③회전식 건조기, ④3상 케이지 유도 전동기에 대한 MEPL 기준 추가

[표 5] MEPL 적용 대상 제품군 및 적용 표준 목록 (개정 규정 Schedule 2 기준)

제품군	MEPL	시험 표준
에어컨 제품 등급 (Schedule 2A의 clause 2에 명시되고 해당 Schedule의 clause 3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대상)	Schedule 2A의 Part 3에 명시된 요구사항	Schedule 2A의 Part 4에 명시된 요구사항
세탁기 (Schedule 2C의 2조에 명시되고 해당 Schedule의 3조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대상)	AS/NZS 2040.2:2005 Schedule 2C의 4조~7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AS/NZS 2040.1:2005 Schedule 2C의 8조~9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컴퓨터 모니터	AS/NZS 5815.2:2013	AS/NZS 5815.1:2012
식기세척기 (Schedule 2D의 2조에 명시된 대상)	AS/NZS 2007.2:2005 Schedule 2D의 3조~5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AS/NZS 2007.1:2005 Schedule 2D의 6조~9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외부 전원 장치	AS/NZS 4665.1:2005 또는 AS/NZS 4665.2:2005 (세부 요건은 규제 원문 해당 항목 참조)	AS/NZS 4665.1:2005 AS/NZS 4665.2:2005

제품군	MEPL	시험 표준
가정용 냉장 기기 (Schedule 2E의 2조에 명시되고 해당 Schedule의 3조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대상)	AS/NZS 4474.2:2009 Schedule 2E의 5조 및 6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AS/NZS 4474.1:2007 Schedule 2E의 7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냉장 캐비닛 (Schedule 2B의 clause 2에 명시되고 해당 Schedule의 clause 3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대상)	Schedule 2B의 5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Schedule 2B의 6조 및 7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회전식 건조기 (Schedule 2F의 2조에 명시된 대상)	AS/NZS 2442.2:2000 Schedule 2F의 4조 및 6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AS/NZS 2442.1:1996 Schedule 2F의 7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텔레비전 세트	AS/NZS 62087.2.2:2011	AS/NZS 62087.1:2010
3상케이지 유도전동기 (Schedule 2G의 2조에 명시되고 해당 Schedule의 3조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대상)	Schedule 2G의 6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Schedule 2G의 7조 및 8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 NZL/78/Add.2의 주요 개정 사항 (Schedule 2A)

○ 대상 제품 범위 확대

- 기존 Schedule 2A는 65kW 이하 에어컨에 대한 효율 기준을 명시
- 개정 규정으로 65kW을 초과하는 에어컨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이에 따라 Schedule 2A의 타이틀을 다음과 같이 변경
 - (기존) 65kW 이하 에어컨 → (개정) 에어컨

○ 세부 제품 유형 추가 및 효율 기준 추가 (Schedule 2A의 2.(1))

- 65 kW을 초과하는 에어컨에 대한 세부 제품 유형과 이에 대한 효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표 6] Schedule 2A의 적용 대상 제품 등급 - Schedule 2A의 2.(1).

제품 유형	제품 등급	구분	R 값	MEPS 레벨
65kW 이하 공랭식 일체형 에어컨	1	벽걸이형 단일형 이중 덕트 에어컨	65 kW 이하	3.1
...

제품 유형	제품 등급	구분	R 값	MEPS 레벨
65kW 초과 공랭식 일체형 에어컨	24	덕트형 또는 비덕트형	65 kW 초과	2.9
공랭식 단일 분리형 시스템	25	덕트형 또는 비덕트형	65 kW 초과	2.9
공랭식 단일 분리형 실외기 (단일 분리형 시스템의 일부로 공급되거나 공급을 위해 제공되지 않은 경우)	26	덕트형 또는 비덕트형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공급되거나 공급을 위해 제공되는지 여부	65 kW 초과	2.9
공랭식 멀티 분리형 실외기 (멀티 분리형 시스템의 일부로 공급되거나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7	-	65 kW 초과	2.9

○ 규제 적용 제외 기준 수정 (Schedule 2A의 3.(1))

- ① 정격 표준 난방 최대 용량이 65kW 초과인 물-공기 에어컨(water-to-air air conditioners)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정격 표준 냉각 최대 용량이 65kW를 초과하는 스팟 쿨러는 규제 대상으로 간주

[표 7] 규제 적용 제외 기준 수정 (Schedule 2A의 3.(1))

기존(현행) 규정	개정 규정(NZL/78/Add.2)
<p>3. 이 Schedule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등급</p> <p>(1) 다음은 이 Schedule에 포함되지 않음</p> <p>(a) 정밀 제어 에어컨</p> <p>(b) 액체 냉각 패키지</p> <p>(c) 증기 압축식이 아닌 증발식 냉각기 또는 기타 모든 냉각 시스템</p> <p>(d) 지하수 에어컨 또는 지중 루프 에어컨</p> <p>(e) 스팟 쿨러</p>	<p>3. 이 Schedule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등급</p> <p>(1) 다음은 이 Schedule에 포함되지 않음</p> <p>(a) 정밀 제어 에어컨</p> <p>(b) 액체 냉각 패키지</p> <p>(c) 증기 압축식이 아닌 증발식 냉각기 또는 기타 모든 냉각 시스템</p> <p>(d) 지하수 에어컨 또는 지중 루프 에어컨</p> <p>(e) 정격 표준 냉각 최대 용량이 65kW 이하인 스팟 쿨러</p> <p>(ea) 정격 표준 냉각 최대 용량이 65kW 초과인 물-공기 에어컨</p> <p>(eb) 난방 전용 제품이며 정격 표준 난방 최대 용량이 65kW 초과인 물-공기 에어컨</p>

기준(현행) 규정	개정 규정(NZL/78/Add.2)
(f) 제습기	(f) 제습기
(g) 캐러밴, 이동식 주택, 캠핑카, 보트, 기차 객실과 같은 최종 사용 이동식 애플리케이션에만 설치되도록 특별히 설계 및 판매되는 주 전원 전기 구동 에어컨	(g) 캐러밴, 이동식 주택, 캠핑카, 보트, 기차 객실과 같은 최종 사용 이동식 애플리케이션에만 설치되도록 특별히 설계 및 판매되는 주 전원 전기 구동 에어컨
(h) 용광로 위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운전 실과 같은 특수 고온 산업 애플리케이션에만 설치되도록 특별히 설계 및 판매되는 주 전원 전기 구동 에어컨	(h) 용광로 위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운전 실과 같은 특수 고온 산업 애플리케이션에만 설치되도록 특별히 설계 및 판매되는 주 전원 전기 구동 에어컨
(i) 조절 대상 공간 내부에서 공급되는 공기가 아닌, 조절 대상 공간 외부에서 공급되는 공기를 조절하여 그 공기를 조절 대상 공간으로 전달하는 에어컨	(i) 조절 대상 공간 내부에서 공급되는 공기가 아닌, 조절 대상 공간 외부에서 공급되는 공기를 조절하여 그 공기를 조절 대상 공간으로 전달하는 에어컨

- 편집자 주석(Compar notes)의 삭제 (Schedule 2A의 전 항목)
 - 기준 규정의 에너지 효율 관련 특정 기준 및 매개변수는 호주의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Air Conditioners up to 65kW) Determination 2019 (Aus)」의 관련 조항의 기준 및 매개변수를 참조하였음
 - 편집자 주석(Compar notes)은 Schedule 2A의 특정 조항과, 인용된 호주 법규 간 연관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개정 규정은 Schedule 2A의 편집자 주석을 일괄 삭제함

□ 주요 인증 정보

- 뉴질랜드 에너지 효율 규정 대상 제품에 적용되는 주요 인증
 - 에너지 효율 기준 및 에너지 효율 라벨링 (본 규정)
 - 전기 장비 안전 시스템* 인증
 - * 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 (EESS)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모두 출시 · 판매되는 제품에는 다음 협약이 적용됨
 - Trans-Tasma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TTMRA) *
 - * 트랜스-태르먼 상호 인정 협정

□ 에너지 기준 및 에너지 효율 라벨링 준수 관련 인증 정보

- 에어컨의 MEPL 및 MEPL 요건에 관한 참조 표준
 - 본 규정 Schedule 2A는 다음 참조 표준을 인용

[표 8] Schedule 2A의 참조 표준 목록

표준 명	내용
AS/NZS 3823.1.1:2012	에어컨 및 열 펌프. 파트 1.1: 비데트형 에어컨 및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등급 부여 (ISO 5151:2010, MOD.)
AS/NZS 3823.1.2:2012	에어컨 및 열 펌프. 파트 1.2: 덕트형 에어컨 및 공기-공기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등급 부여 (ISO 13253:2011, MOD.)
AS/NZS 3823.1.3:2005	에어컨 및 열 펌프. 파트 1.3: 수열원 열 펌프 - 물-공기 및 염수-공기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등급 부여 (ISO 13256-1, 에디션 01 (1998), MOD.)
AS/NZS 3823.1.4:2012	에어컨 및 열 펌프. 파트 1.4: 다중 스플릿 시스템 에어컨 및 공기-공기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등급 부여 (ISO 15042:2011, MOD.)
AS/NZS 3823.1.5:2015	에어컨 및 열 펌프. 파트 1.5: 단일 배기 덕트를 갖는 비데트형 이동식 공랭식 에어컨 및 공기-공기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등급 부여

표준 명	내용
AS/NZS 3823.4.1:2014	에어컨 및 열 펌프. 파트 4.1: 공랭식 에어컨 및 공기-공기 열 펌프 - 계절 성능 계수 시험 및 계산 방법 - 냉방 계절 성능 계수 (ISO 16358 1:2013, MOD.)
AS/NZS 3823.4.2:2014	에어컨 및 열 펌프. 파트 4.2: 공랭식 에어컨 및 공기-공기 열 펌프 - 계절 성능 계수 시험 및 계산 방법 - 난방 계절 성능 계수 (ISO 16358 2:2013, MOD.)
AHRI 1230:2010	가변 냉매 유량(VRF) 멀티-스플릿 에어컨 및 열 펌프 장비의 성능 등급에 관한 공조, 난방 및 냉동 협회 표준 1230
EN 12102-1:2017	전기 구동 압축기를 갖는 에어컨, 액체 냉각 패키지, 열 펌프, 공정 냉각기 및 제습기 — 음향 출력 레벨 결정에 관한 유럽 표준 12102-1:2017. 파트 1: 에어컨, 액체 냉각 패키지, 공간 난방 및 냉각용 열 펌프, 제습기 및 공정 냉각기
EN 14511:2018	전기 구동 압축기를 갖는 공간 난방 및 냉각용 에어컨, 액체 냉각 패키지 및 열 펌프, 그리고 공정 냉각기에 관한 유럽 표준 14511:2018
ISO 5151:2017	비데트형 에어컨 및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등급 부여에 관한 국제 표준화 기구 표준 5151:2017
ISO 13253:2017	데트형 에어컨 및 공기-공기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등급 부여에 관한 국제 표준화 기구 표준 13253:2017
ISO 15042:2017	다중 스플릿 시스템 에어컨 및 공기-공기 열 펌프 — 성능 시험 및 등급 부여에 관한 국제 표준화 기구 표준 15042:2017

□ 전기 안전 인증

○ 개요

- 뉴질랜드와 호주는 전기 장비 안전 시스템(EESS)을 통해, 전기 장비를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을 받도록 함
- 전기 장비는 위험 레벨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분류
 - * 전기 장비 위험 레벨 분류는 다음 [URL](#)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에어컨은 ①가연성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되며, ②불연성 또는 낮은 가연성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 중간 위험 품목으로 분류됨

○ 인증서 종류 및 요건

- 인증서 구분

- (Certificate of Conformity) 고위험 품목에 의무적 인증
- (Certificate of Suitability) 중위험 및 저위험 품목에 발급받을 수 있는 자발적 인증
- 인증 신청 자격
 - (인증 신청자) 반드시 호주/뉴질랜드 법인일 필요 없음
 - (책임 공급자) 뉴질랜드/호주 내에서 제조하거나 해당국으로 수입하는 주체는, 반드시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이어야 함
- 인증서 보유만으로는 규제 준수 마크(RCM)를 부착할 수 없으며, 책임 공급자가 EESS 데이터베이스에 제품을 등록해야 최종적으로 RCM 사용이 허용
-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 승인된 시험 기관의 시험 보고서
 - 장비의 내부 및 외부 구조, 모양 및 특징, 부품 세부 정보 및 방향을 보여주는 컬러 이미지 (사진에는 제품의 전체 이미지 포함)
 - 인증 대상 장비의 상표명 및 모델에 대한 각 명판 이미지
 - 해당 품목 및 모든 변형 모델(다른 모델)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기술 문서
 - 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
 - 인증 기관이 요구하거나 Equipment Safety Rules 또는 EESS 규제 기관이 발행한 기타 문서에 따른 기타 문서
 - 필요한 신청 수수료
-

○ 위험 등급별 규제 준수 증명 방법

- 규제 준수 증명 방법은 다음 표를 참조

위험 등급	필수 사항	선택 사항
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표준 준수 증거 확보 ○ 책임 공급자 등록 ○ 관련 표준 준수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rtificate of Suitability
중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pliance Folder^(*) 보관 ○ 책임 공급자 및 장비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rtificate of Suitability

위험 등급	필수 사항	선택 사항
고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표준 준수 증거 확보 ○ Certificate of Conformity ○ 책임 공급자 및 장비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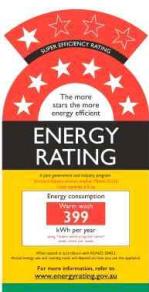
- * 독립적인 시험 기관 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가 평가한, 해당 장비가 관련 표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영어로 작성된 증거
- (시험 성적서 요건) 모든 시험 성적서는 국제 뉴질랜드 인정 기구(IANZ), 호주 국립 시험 기관 협회(NATA) 또는 뉴질랜드와 상호 인정 협약(MRA)을 맺은 국가의 공인 시험소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함

□ TTMRA 관련

-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협정으로, 한 국가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여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한 제품은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상대국에서도 판매 가능
- 적용 조건
 - 뉴질랜드에 수입 · 판매되는 규제 제품이 해당 국가 관할권 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었을 것
 - 뉴질랜드에 수입 · 판매되는 규제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위한 모든 법적 요건(안전 인증, 라벨링 등)을 충족할 것

□ 에너지 효율 라벨 및 전기 안전 라벨 예시

- 다음과 같은 MEPL 및 RCM 라벨을 부착함

MEPL 마크	RCM 마크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유럽연합

- (현행 규정) 가정용 소형 에어컨(12kW 이하)의 에코디자인 요건은 Regulation (EU) No 206/2012을 따르며, 에너지 라벨링은 Regulation (EU) No 626/2011을 따름
- (도입동향)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을 대체하는 Regulation (EU) 2024/1781 (ESPR 규정)이 2024년 발효됨에 따라, 향후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뿐만 아니라 수리 용이성,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순환 경제 요건이 강화될 예정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REPower EU」 계획에 따라 히트펌프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Regulation (EU) No 813/2013에 따른 공간 난방기의 효율 요건이 검토 및 강화되는 추세

2

영국

- (현행 규정) 브렉시트 이후 EU 법령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The Ecodesign for Energy-Related Products and Energy Information Regulations 2021」을 따름
 - EU와 유사하게 12kW를 기준으로 소형과 대형 제품군을 나누어 MEPS를 적용하며, 적합성 평가 후 UKCA 마크를 부착
- (도입동향)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인 「Future Homes and Buildings Standards」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신축 건물에 설치되는 난방 시스템의 효율 기준이 강화될 전망임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2021년 개정된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수리 받을 권리 요건을 명시하고, 예비 부품의 의무 보유 기간을 설정

- (현행 규정) 인도 에너지효율국(BEE)의 표준 및 라벨링(S&L) 프로그램에 따라 룸 에어컨(Split, Window 타입)은 강제적으로 스타 라벨링(Star Rating)을 획득해야 함
 - 마크는 BIS의 강제 인증 마크를 취득해야 함
- (도입동향) 상업용 대형 에어컨 및 냉각기는 현재 자발적 단계에서 강제적 단계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Energy Conservation Building Code」에 따라 대형 건물의 시스템 에어컨 효율을 규제함
- (유사품목 제도 도입동향) 2023년부터 천장형 팬이 BEE의 자발적 인증 품목에서 강제적 인증 품목으로 전환되어, 스타 라벨 부착이 의무화됨

2. 주요국(유럽, 영국, 인도) 규제 수준 비교

구분	뉴질랜드	EU	영국	인도
상위 법·프레임(전반)	Energy Efficiency Regulations 2002	Directive 2009/125/EC(ESP R로 전환 중)	Ecodesign for Energy-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2	Energy Conservation Act, 2001
주요 규제부처	산업혁신고용부	EU 집행위원회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에너지효율국 (BEE) 인도표준국 (BIS)
인증(강제적/자발적)	강제적	강제적	강제적	강제적
대형 에어컨 규제	65kW 초과 에어컨에 대한 MEPS 기준 신설	12kW 초과 제품에 대해 Regulation (EU) 2016/2281 적용	EU 규정을 승계하여 12kW 초과 제품 규제 유지	칠러(Chiller) 및 VRF 시스템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
적합성 평가	AS/NZS 3823 시리즈 및 ISO 5151/13253 등 적용	EN 14511, EN 14825 등 조화 표준 적용	BS EN 14511, BS EN 14825 등 지정 표준	IS 1391 (룸 에어컨), IS 16590 (냉각기) 등
라벨링 및 등록 요건	에너지 등급 라벨 부착 및 관할 당국에 등록 의무	제품에 에너지 라벨 부착 및 EPREL(제품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	에너지 라벨 부착 및 기술 문서 보관 의무	제품에 별(Star) 등급 라벨 부착 및 BEE 포털 등록 의무
규제 동향 특징	호주(GEMS) 규정과 조화 (Harmonization)를 통한 시장 통합	지속가능성(ESPR) 및 냉매 규제(F-gas)와 결합된 포괄적 규제	브렉시트 후 독자적 표준 구축 중이나 EU와 유사성 유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QCO (품질관리명령)와 에너지 효율 규제 병행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 본 개정안은 에어컨에 대한 MEPS 및 MEPL 기준에, 65kW를 초과하는 대형 에어컨에 대한 효율 기준을 추가함

항목	내용
규정명	에어컨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규정 개정
관리기관	산업혁신고용부
법적근거	Energy Efficiency Regulations 2002
통보문서	통보
주요목적	65kW 초과 대형 에어컨에 대한 효율 기준을 추가

○ 주요 지표 비교

-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 매개변수는, 정격 표준 냉방 · 난방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난방 에너지 효율(COP), 냉각 에너지 효율(AEER)을 유지하며, 대형 에어컨에 대한 효율 기준만을 추가함
- EU의 경우, Regulation (EU) 2016/2281에서 단순 정격 효율이 아닌, 연중 다양한 기온 변화를 고려한 계절별 에너지 효율(SEER)을 기준으로 함

○ 효율 기준 비교

- 기준 매개변수의 차이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65kW 초과 공랭식 분리형 시스템에 대해 대략적인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뉴질랜드) MEPS 2.9 (EER 기준)
 - (EU) MEPS 4.0 (SEER 기준)
- 상기 효율 기준은 유럽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뉴질랜드의 기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며, 규제 강도는 유럽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규제 개정의 목적

- NZL/78/Add.1의 통보 목적은 그 동안 규제 사각지대였던 65kW 초과 제품군에 대한 성능 기준 하한선을 설정하여, 저효율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 평가 항목별 분석

평가 항목	평가
신규 효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CE 마크/에코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에어컨을 수출하고 있다면, 뉴질랜드의 이번 신규 기준은 기술적으로 큰 장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뉴질랜드는 AS/NZS 3823 시리즈라는 별도의 시험 표준을 사용하므로, 시험 조건(온도 등)의 차이에 따른 재시험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구분	애로유형	구체적 발생 원인	영향경로
규제 대상 확대	인증 획득 비용 및 출시 지연	기존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65kW 초과 대형 에어컨에 대해 MEPS(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준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상업용/산업용 제품군의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비용 발생 및 시장 출시 리드타임 증가
시험 표준 상이	중복 시험 발생 및 비용 증가	EU(SEER 기준)와 달리 정격 냉·난방 효율(AEER/COP) 기준을 유지하며, AS/NZS 3823 시리즈라는 별도 시험 표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ulation (EU) 2016/2281 등 유럽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도 뉴질랜드 시험 조건(온도 등)에 맞춘 재시험 및 성적서 발급 비용 발생
행정 부담	라벨링 및 등록 공수 증가	대상 제품에 대해 의무 에너지 효율 라벨(MEPL)을 부착하고, 관할 당국에 사전 정보 등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공급자 요건으로 현재 대리인 선임 등 행정 부담이 발생

○ 결론 및 권고 사항

- 뉴질랜드의 시험 표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 표준과 일치화 되지 않은 표준	해당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 제품의 차별적 대우	해당 없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 없음
4	불필요한 무역 방해 초래	해당 없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 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해당 없음
8	외국의 유사 인증 불인정 등	해당 없음

□ 대응방안

○ 기업 규모별 전략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기업	비용 효율화와 선택 및 집중	- TTMRA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고 인증 및 시험 기관이 많은 호주에서 인증 절차 진행
중견기업	유효기간 내 전환 및 갱신	- 개정 규정 시행 전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대조하여 사전 갱신 계획 수립
대기업	글로벌 표준 조화를 고려한 설계	- 규제 수준이 더 높은 유럽(EU), 미국 등의 요구사항을 포괄하는 고효율 제품 설계 반영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KnowTBT 포털(knowtbt.kr)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KnowTBT 포털(knowtbt.kr)의 상담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 포털(Knowtbt.kr) 접속 → 상담신청)

※ 본 번역 문서는 기계 번역한 자료로, 원문과 의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반드시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사용 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규정

- Schedule 2B ~ 2G는 제외

2025/227



에너지 효율성(에너지 사용 제품) 개정 규정 2025

신디 키로, 총독

국무회의 명령

2025년 10월 13일 웰링턴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총독 각하

본 규정은 2000년 에너지 효율 및 보존법 제36조(1)항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 (a) 행정부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제정되었으며,
- (b) 동법 제36조(2)항에 따라 에너지부 장관이 제출한 권고에 따라 제정한다.

목차

	페이지
1 제목	2
2 시행	2
3 주요 규정	2
4 개정된 규정 3 (해석)	2
5 규정 16A 상단 교차 제목 개정	2
6 규정 16A 개정 (규정의 항공 적용) 65kW 이하의 공조기 및 냉장 캐비닛에 대한 규정 적용)	2
7 규정 17 위의 교차 표제 수정됨	3
8 부칙 1 개정	3
9 부칙 2 개정	5
10 부칙 2A 개정	6
11 부칙 2B 개정	7
12 신규 부칙 2C, 2D, 2E, 2F 및 2G 삽입	7

1

부칙 1	8
신규 부칙 2C 삽입	
부칙 2	19
신규 부칙 2D 삽입	
부칙 3	28
신규 부칙 2E 추가	
부칙 4	34
신규 부칙 2F 삽입	
부칙 5	44
신규 부칙 2G 삽입	

규정

1. 제목

이 규정은 2025년 에너지 효율(에너지 사용 제품) 개정 규정입니다.

2. 시행

본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 주요 규정

이 규정은 2002년 에너지 효율(에너지 사용 제품) 규정을 개정합니다.

4. 개정된 규정 3 (해석)

IEMPS란 미국 에너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가 관리하는 2013년 9월판 외부 전원 공급 장치용 국제 효율 표시 프로토콜(International Efficiency Marking Protocol for External Power Supplies) 버전 3.0을 의미한다.

규정 제3조에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 다음을 삽입한다:

5. 규정 16A의 상단 부제목 개정

규정 16A 상단 제목에서 "65kW 이하 에어컨 및 냉장 캐비닛"을 "부속서 2A부터 2G까지 적용 대상 제품"으로 대체합니다.

6. 규정 16A 개정 (65kW 이하 에어컨 및 냉장 캐비닛에 대한 규정 적용)

- (1) 규정 16A의 제목에서 "65kW 이하 에어컨 및 냉장 캐비닛"을 "부칙 2A부터 2G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대체한다.

(2) 규정 16A에서,—

- (a) "부칙 2A 및 2B가 효력을 가진다"를 "부칙 2A부터 2G까지가 효력을 가진다"로 대체한다; 그리고
- (b) "각각의 부표 2A 및 2B의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의 해당 부표의 제2조"로 대체한다.

7 규정 17 의 상단 소제목 개정

규정 17 위의 소제목에서 "제1부표 또는 제2부표의 기준이 대체되거나 새로운 기준이 추가된 경우"를 "제1부표 또는 제2부표에서"로 대체한다.

8 의 부표 1 개정

(1) 부표 1에서 냉각기에 관한 항목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냉각기(다음은 제외):	AS/NZS 4776.2:2008: 증기 압축 사이클을 사용하는 액체 냉각 장치—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준수 요건	AS/NZS 4776.1.1:2008: 증기 압축 사이클을 사용하는 액체 냉각 패키지 — 성능 평가 및 시험 방법 — 등급 분류 및 성능 시험 방법—등급; 그리고
• 전기 모터로 구동 되지 않는 액체 냉각 패키지:	냉각 패키지—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MEPS) 및 준수 요건	AS/NZS 4776.1.2:2008: 증기 압축 사이클을 사용하는 액체 냉각 패키지 — 등급 평가 방법 성능 테스트—테스트
• 공기 냉각식 원심 팬 장착 액체 냉각 패키지:		
• 원격 응축기를 갖춘 액체 냉각 패키지:		
• 물 이외의 유체용 액체 냉각 패키지:		
• 자체 제어 시스템을 갖춘 추가 통합 자연 냉각 회로가 장착된 자연 냉각 액체 냉각 패키지(공랭식):		
• 응축수 활용 제어 및 브라더가 장착된 프리 쿨링 액체 냉각 패키지(수냉식):		
• 냉매 흐름 역전 기능을 위한 부품 및 제어 장치 가 포함된 히트 펌프(역순환) 액체 냉각 패키지:		

- 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할 수 있는 구성품 및 제어 장치를 갖춘 열회수형 액체 냉각 패키지

(2) 부속서 1에서 정밀 공조 장치 관련 항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정밀 제어 공기조화기(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AS/NZS 4965.2:2008: 정밀 제어 공조기 성능—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요구사항	AS/NZS 4965.1:2008: 정밀 온도 조절 에어컨의 성능—등급 평가 시험
(a) 랙 인클로저가 포함된 열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 둘거운 공기를 냉각하고 냉각 통로(예: 밀착형 열 기반 냉각 장치)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리고 제조사가 최소 35°C 건구 유입 공기 온도까지의 작동 데이터를 공개한 제품		
(b)		

(3) 부속서 1에서 가정용 냉장 기기에 관한 항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부칙 2E 제2조에 명시된 가정용 냉장 기기 제품군(해당 부칙 제3조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경우)	부속서 2E 제4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부속서 2E 제7조에 명시된 요구사항
--	----------------------	----------------------

(4) 부칙 1에 알파벳 순서에 따라 다음을 삽입한다:

부속서 2F 제2조에 명시된 회전식 의류 건조기	부칙 2F 제3조에 명시된 요건	부칙 2F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명시된 요건
----------------------------	-------------------	----------------------------

(5) 부칙 1에서 삼상 케이지 유도 전동기에 관한 항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부칙 2G 제2조에 명시된 삼상 케이지 유도 전동기(해당 부칙 제3조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	부칙 2G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요건	부칙 2G의 제7조 및 제8조에 명시된 요건
---	-------------------------	--------------------------

(6) 부칙 1에서 관형 형광등 관련 항목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관형 형광등(방염등기구용으로 설계된 선형 형광등 제외)	AS/NZS 4782.2:2004: 양단 캡 형광등 — 성능 사양 —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AS/NZS 4782.1:2004: 양단형 형광등 — 성능 사양 — 일반
-----------------------------------	---	---

9 부칙 2 개정

- (1) 부록 2에서 의류 세탁기와 관련된 항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부칙 2C 제2항에 명시된 의류 세탁기(동 부칙 제3항에 의해 제외 되지 않은 것)	부칙 2C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명시된 요건	부칙 2C 제8조 및 제9조에 명시된 요건
--	---------------------------	-------------------------

- (2) 부칙 2에서 식기세척기와 관련된 항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부칙 2D 제2조에 명시된 식기 세척기	부칙 2D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명시된 요건	부칙 2D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명시된 요건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외부 전원 공급 장치는 AS/NZS 4665.1:2005 부록 A에 명시된 Mark V 에너지 성능 요건을 초과하고 IEMP의 Mark VI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Mark V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AS/NZS 4665.1:2005: 외부 전원 공급 장치의 성능 — 시험 방법 및 에너지 성능 표시, 및 AS/NZS 4665.2:2005: 외부 전원 공급 장치의 성능 —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요구사항

- (a) Mark V 요건은 AS/NZS 4665.1:2005 부록 A에 명시된 AS/NZS 4665.2:2005 의 4.2항 및 5항; 또는

- (b) IEMP에 명시된 Mark VI

기타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 (a) AS/NZS 4665.1:2005:
외부 전원 공급 장치의 성능 — 시험 방법 및 에너지 성능 표시; 그리고
(b) AS/NZS 4665.2:2005:
외부 전원 공급 장치의 성능 —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MEPS) 요구사항

- (3) 부속서 2에서 가정용 냉장 기기에 관한 항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부칙 2E 제2조에 명시된 가정용
냉장 기기 제품군(해당 부칙 제3
조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

- (4) 부칙 2에서 회전식 의류 건조기와 관련된 항목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부칙 2F 제2항에 명시된 회전
식 의류 건조기 부칙 2F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명시
된 요건 부칙 2F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명시된 요
건

- (5) 부칙 2에 알파벳 순서에 따라 삽입한다:

부칙 2G 제2항에 명시된 3상 케
이지 유도 전동기(해당 부칙 제3
항에 의해 제외되지 않은 것)

10 부칙 2A 개정

부속서 2A 에어컨

- (1) 부속서 2A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2) 부칙 2A, 제1조(1)(a)항에서 "23"을 "27"로 대체한다.
(3) 부칙 2A, 제2조(1)항 표에서 공기-공기 일체형 에어컨 관련 항목 앞에 다음을 삽입한다:

65kW 이하 에어컨

- (4) 부칙 2A, 제2조(1)항, 표에서, 수냉식 공조기 관련 항목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65kW 초과 공조기				
공기-공기 일체형 에어컨	24	덕트식 또는 비덕트식	65kW < R	2.9
공기 대 공기 단일 스 플릿 시스템	25	덕트형 또는 비덕트형	65 kW < R	2.9
공기 대 공기 단일 분할 설외기 (단일 분할 시스 템의 일부로 공급되거나 제공되지 않음)	26	덕트식 또는 비덕트식 시스템 구축 을 위해 공급되거나 공급 제한되는 지 여부	65 kW < R	2.9
공기 대 공기 다중 분리형 설외기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또는 제안 멀티 시스템의 일부로 분리형 시스템의 일부로	27		65 kW < R	2.9

- (5) 부칙 2A, 조항 3(1)(e)에서 "냉각기" 뒤에 "정격 표준 냉각 최대 용량이 65kW 이하인"을 삽입한다.

(ea) 정격 표준 냉방 최대 용량이 65kW를 초과하는 수냉식 공조기:

(eb) 난방 전용 제품이며 정격 표준 난방 최대 용량이 65kW를 초과하는 수냉식 공조기:

(6) 부칙 2A에서 제3조 제1항 제e호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7) 부칙 2A, 제7조(1)(a)항에서 "5부터 23까지"를 "5부터 27까지"로 대체한다.

(8) 부칙 2A, 제8조(1)(a)항에서 "5부터 23까지"를 "5부터 27까지"로 대체한다.

(9) 부칙 2A, 제27조(3)항에서 "도면 14~17. 모든 유형의 중량은 정규 중량이어야 한다."를 "도면 9~12. 도면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유형의 중량은 정규 중량이어야 한다."로 대체한다.

(3) 단, 제2항(a)호는 다음의 에어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정격 표준 냉방 최대 용량이 65kW를 초과하는 제품; 또는

(b) 난방 전용 제품이며 정격 표준 난방 최대 용량이 65kW를 초과하는 경우.

(10) 부칙 2A에서 제50조(2)항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11) 부칙 2A의 조항 2부터 59까지에서 비교 주석을 폐지한다.

11 부칙 2B 개정

부칙 2B의 조항 2부터 27까지의 비교 주석을 폐지한다.

12 신규 부칙 2C, 2D, 2E, 2F 및 2G 삽입

부칙 2B 이후에, 본 규정 부칙 1부터 5에 명시된 부칙 2C, 2D, 2E, 2F 및 2G를 삽입한다.